

개인 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 소득 관련 준비서류

소득 종류	캐나다 소득 서류	한국 소득 서류
근로소득	T4, T4A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소득	T4A(OAS), T4A(P), T4RIF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배당	T3, T5, T4PS, T5013	금융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T3, T5, T5013	금융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임대소득	수입/비용 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손익계산서
주식양도	Trading summary	주식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취득/양도)
부동산 양도소득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매매계약서(취득/양도)
사업소득	수입/비용 명세서, T4A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손익계산서
RRSP 인출	T4RSP	해당 사항 없음
기타소득	WCB(T5007), Support Payment	기타

▶ 공제 항목 준비서류

소득공제 항목	필요 서류	비고
RRSP 구입	RRSP 구입 영수증	소득공제를 위해 60 일 이내에 구입하여야 함
자녀양육비용	16 세 이하 자녀 육아비용 영수증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근로/사업소득이 있을때
이사비용	이사비용, 여행비, 임시거주비(15 일 까지) 등	근로/사업소득을 위해 이사한 경우에 가능
사업투자손실	투자회사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 자료	법인에 투자한 손실에 대한 공제
투자관리/이자비용	투자관리비, 대출금 이자비용	투자를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근로비용	자동차 경비, 주택 사용 경비, 광고비 등	고용주로부터 T2200 양식을 발급받아야 함
기타	협회비, T4(성직자 거주비 공제)	성직자 거주지공제는 T1223 양식이 필요함
세액공제 항목	필요 서류	비고
의료비	의료비 영수증(조제약, 진료비, 치과, 안경 등)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용도 공제가 가능함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세무신고용)	최대 45.80%의 세금 절약 효과 있음
교육비	T2202(캐나다 대학), TL11A(해외 대학)	부모가 이전하여 \$5,000 까지 사용 가능함
주택개조비용	영수증(세무신고용)	노인 또는 장애가족의 경우 \$10,000 까지 공제됨
학자금 이자	영수증(세무신고용)	Canada Student Loans Act 등에 따른 대출금
정치기부금	영수증(세무신고용)	\$1,275 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공제됨